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 사 보 고 서

제 9(당)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8(전)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삼성회계법인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5

・운영성과표 7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총회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2월 20일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 및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2호
삼 성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조 동 근

2023년 2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제 9(당)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8(전)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이사장 문진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3층(신정동, 영인빌딩)

(전 화) 1644-7113

재 무 상 태 표

제 9(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8(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단위 : 원)

과 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4,793,057,608		4,258,228,708
(1) 당좌자산		4,360,378,256		4,022,124,284
현금및현금성자산	351,025,034		293,214,562	
단기금융상품(주석3,7)	3,980,000,000		3,717,700,000	
미수금	2,044,794		1,701,064	
선급금	4,073,162		1,917,798	
미수수익	16,870,736			
당기법인세자산	6,364,530		7,590,860	
(2) 재고자산		432,679,352		236,104,424
기부물품(주석4,9)	432,679,352		236,104,424	
II. 비유동자산		686,038,825		702,657,611
(1) 유형자산(주석5)		52,388,225		66,314,011
차량운반구	126,164,070		132,135,450	
감가상각누계액	(81,219,081)		(72,787,247)	
비품	16,760,400		13,384,400	
감가상각누계액	(9,317,164)		(6,418,592)	
(2) 기타비유동자산		633,650,600		636,343,600
임차보증금	615,000,000		625,000,000	
기타보증금	18,650,600		11,343,600	
자 산 총 계		5,479,096,433		4,960,886,319
부 채				
I. 유동부채		7,170,210		79,200
예수금	-		79,200	
미지급비용	7,170,210			
II. 비유동부채		-		7,95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		7,950,000	
부 채 총 계		7,170,210		8,029,200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주석7,8)		50,000,000		50,000,000

과 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Ⅲ. 보통순자산(주석8)		5,421,926,223		4,902,857,119
잉여금	2,291,926,223		1,972,857,119	
준비금	3,130,000,000		2,930,000,000	
순 자 산 총 계		5,471,926,223		4,952,857,119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5,479,096,433		4,960,886,31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9(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8(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단위 : 원)

과 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Ⅰ. 사업수익		7,413,278,797		6,006,294,413
기부금수입(주석9)	6,382,074,228		5,956,880,789	
이자수익	41,588,159		49,413,624	
보조금수익	894,552,090		-	
고유목적사업수입	95,064,320		-	
Ⅱ. 사업비용		6,900,257,750		5,031,828,498
(1) 사업수행비용(주석10,13)	5,054,025,506		3,567,559,472	
(2) 일반관리비용(주석11,13)	496,097,534		388,208,259	
(3) 모금비용(주석12,13)	1,350,134,710		1,076,060,767	
Ⅲ. 사업이익		513,021,047		974,465,915
Ⅳ. 사업외수익		16,921,556		4,841,767
기타보조금수익	5,972,080		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568,666		-	
잡이익	8,380,810		4,641,767	
Ⅴ. 사업외비용		10,873,499		3,941,450
유형자산처분손실	2,761,733		1,600,000	
사업비반납	8,103,860		-	
잡손실	7,906		2,341,450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14)	41,588,159		49,413,624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14)	41,588,159		49,413,624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519,069,104		975,366,232
Ⅸ. 법인세등(주석15)		-		-
Ⅹ. 당기운영이익		519,069,104		975,366,23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9(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8(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

1. 법인의 개요

사단법인 더불어함께새희망(이하 "법인"이라 함)은 2014년 12월 1일 민법 제32조의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영인빌딩, 303호 이며, 이사장은 문진환입니다.

법인은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에게 민간차원에서 지역 이념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문화 적응과 생활안정을 영위하도록 교육, 상담,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가. 북한이탈 청소년 학습능력 향상,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나.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트라우마 상담사업
다.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문화, 스포츠, 체육활동사업
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및 청소년 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마. 더불어 함께 장학사업
바. 북한이탈주민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사. 푸드뱅크 운영사업
아. 평생교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자. 노인복지사업

2. 유의적인 회계정책

법인은 법인의 정관 및 2017년 12월 8월 제정·고시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2018년

1월 1일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및현금성자산

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 유형자산

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

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마. 종업원급여

법인은 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기본순자산

법인은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이자수익 등 목적사업 이외의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수익의 인식기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의 결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이며,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등의 수입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등 금융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의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투입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활동간 공통비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법인 정관에 의하여 사용 제한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50,000	50,000
합 계		50,000	50,000

4. 재고자산

당기 중 재고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부물품	236,104	2,156,924	1,960,349	432,679

5. 유형자산

가.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기초	당기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차량운반구	59,348	17,529	8,053	(23,879)	44,945
비품	6,966	4,080	540	(3,063)	7,443
합계	66,314	21,609	8,593	(26,941)	52,388

(단위 : 천원)

구분	전기				
	기초	당기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차량운반구	58,151	27,286	(2,200)	(23,889)	59,348
비품	6,617	2,838	-	(2,489)	6,966
합계	64,768	30,124	(2,200)	(26,378)	66,314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분하되, 기 처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중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당기중 목적사업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당기말 현재 누적하여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없습니다.

7. 기본순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본재산으로 등록한 세부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주1)	50,000	50,000
계	50,000	50,000

(주1) 기본재산의 사용이나 처분에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으로 사용변경 및 처분이 제한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합니다.

8.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및 전기 중 순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합계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50,000,000	2,290,000,000	1,625,208,401	3,965,208,401
당기운영이익	-	-	975,366,232	975,366,232
적립금적립	-	640,000,000	(640,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	-	12,282,486	12,282,486
전기말	50,000,000	2,930,000,000	1,972,857,119	4,952,857,119
당기초	50,000,000	2,930,000,000	1,972,857,119	4,952,857,119
당기운영이익	-	-	519,069,104	519,069,104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합계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적립	-	200,000,000	(200,000,000)	-
당기말	50,000,000	3,130,000,000	2,291,926,223	5,471,926,223

9.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 및 전기에 현물로 기부 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생활용품 및 음식료	2,156,924,197	1,621,245,388

10. 사업수행비용

당기 및 전기의 사업수행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및시설단체지원사업	2,089,950,620	987,118,553
생계비지원사업	190,354,789	276,887,732
의료비지원사업	74,242,753	171,365,742
장학금지원사업	41,879,173	83,651,822
나눔캠페인사업	788,452,915	1,078,819,445
해외지원사업	-	-
푸드뱅크운영사업	1,862,330,241	962,489,635
기타지원사업	6,815,015	7,226,543
합계	5,054,025,506	3,567,559,472

11. 일반관리비용

당기 및 전기의 일반관리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348,597,190	229,096,648
상여	-	29,220,052
퇴직급여	11,243,504	4,181,457
복리후생비	7,358,949	5,360,024
사회보험료	4,132,213	4,221,109
교육훈련비	6,117,080	1,271,921
업무추진비	-	174,400
회의비	1,483,720	2,142,380
지급수수료	24,267,827	30,601,712
여비교통비	942,400	206,200
통신비	5,518,474	4,707,094
도서인쇄비	312,950	1,620,100
세금과공과	48,070,530	48,222,650
임차료	15,472,201	11,033,133
수도광열비	1,158,489	750,905
감가상각비	7,980,397	5,858,814
소모품비	12,241,610	8,339,660
잡비	1,200,000	1,200,000
계	496,097,534	388,208,259

12. 모금비용

당기 및 전기의 모금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381,322,607	401,494,495
상여	-	51,208,475

구분	당기	전기
퇴직급여	64,955,506	74,778,274
복리후생비	26,028,229	27,302,763
사회보험료	34,660,054	39,430,788
교육훈련비	5,276,000	4,409,370
업무추진비	-	258,000
지급수수료	439,801,875	164,669,746
여비교통비	18,978,651	38,672,380
통신비	6,117,483	3,908,760
보험료	56,528,742	33,762,816
도서인쇄비	17,865,915	13,897,935
세금과공과	17,271,410	15,918,020
차량유지비	68,558,257	68,649,288
임차료	17,938,447	21,122,957
시설관리비	21,830,878	22,955,670
수도광열비	1,343,152	1,437,611
감가상각비	9,252,460	11,216,712
광고선전비	102,310,672	72,113,197
소모품비	60,094,372	8,853,510
합계	1,350,134,710	1,076,060,767

13. 비용의 성격별 구분에 관한 내역

당기 및 전기의 법인의 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합계
분배비용	3,254,132,994	-	-	3,254,132,994
인력비용	1,355,348,252	377,448,936	512,242,396	2,245,039,584
시설비용	289,335,983	24,611,087	118,923,194	432,870,264
기타비용	155,208,277	94,037,511	718,969,120	968,214,908
계	5,054,025,506	496,097,534	1,350,134,710	6,900,257,750

(단위 : 원)

구분	전기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합계
분배비용	2,486,377,659	-	-	2,486,377,659
인력비용	864,473,168	273,351,211	598,624,165	1,736,448,544
시설비용	90,324,747	17,642,852	125,382,238	233,349,837
기타비용	126,383,898	97,214,196	352,054,364	575,652,458
계	3,567,559,472	388,208,259	1,076,060,767	5,031,828,498

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	-
설정	41,588,159	49,413,624
사용	41,588,159	49,413,624
기말	-	-

15. 법인세비용

법인은 공익목적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의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므로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16. 재무제표의 확정

법인의 2022년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에 개최될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